

생활과학대학 전임(기금)교원 신규채용 심사지침

제정 2001.2.20.

개정 2003.5. 7.

개정 2004.4. 7.

개정 2004.4.13.

개정 2008.3.20.

개정 2011.1.17.

개정 2015.4.16.

개정 2019.6. 5.

개정 2022.8.1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생활과학대학 전임(기금)교원 신규채용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방법) ①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사는 심사사항별로 심사위원을 지명하여 실시하고 각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평정한다.

② 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와 면접심사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면접심사 단계의 공개발표에 모의(공개)강의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6. 5., 2022.8.11.]

가.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 1) 전공부분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 2) 연구실적물(40%)
- 3) 총괄연구업적(20%)

나. 면접심사(2단계)

- 1) 공개발표(외국어 포함) (15%)
- 2)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 계획서(15%)
- 3) 임용적합성(10%)

③ 학장은 접수된 지원자들의 서류를 사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분야가 기록되지 않은 서류, 혹은 해당분야가 분명치 않은 서류
2. 생활과학대학 전임교원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모자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3. 연구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실적물을 제출하여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조(기초 및 전공심사) 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범위, 인정 및 인정점수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의4 규정을 따르며, 지원자는 지원 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공동연구의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 논문을 1편 이상 포함하여 200점 이상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 또는 5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공동연구의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 논문을 2편 이상 포함하여 400점 이상 6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본인선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0.00.]

② 국내외 공인학술지에 온라인으로 게재된 논문(단, DOI번호가 명시된 것에 한함), 박사학위논문도 연구실적물의 최종평가 대상으로 인정한다. 단,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학술지 게재논문 또는 서로 중복되는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그 중 지원자가 지정하는 하나의 연구실적물만 인정한다. [개정 2011. 1. 17.][개정 2019. 6. 5.]

제3조의2(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및 연구실적물 심사) ①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및 연구실적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학과(부)장으로부터 학내인사와 학외인사를 구분하여 위촉할 심사위원보다 많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본교 교원 3명, 학외인사 2명을 정한 바에 따라서 학장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최근 3년 또는 5년 이내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전공부분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평균이 2.0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 미만일 때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7.]

③ 연구실적물에 대한 내용평가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의3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평정은 심사위원 5명이 각자 그 내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등급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그 실적물의 내용평가 점수로 한다. [개정 2022.8.11.]

④ 제3조제1항에 따라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연구실적물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하며 이때 1편 이상의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논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또는 400점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6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평가한 후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4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연구실적물을 최종평가 대상으로 하며 이때 2편 이상의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논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내용평가에 반영한다. [개정 2011. 1. 17.]

⑤ 학장은 심사위원 심사보고서에 따라 모집분야에 대한 연구실적물의 합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내용평가점수를 환산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⑥ 제5항에서 합당으로 판정되고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5조제3항에 내용평가 점수가 정한 바에 따라 4.0 이상일 때 적격으로, 동 기준에 미달할 때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이후 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총괄연구업적 심사) ① 총괄연구업적은 심사위원규정을 만족시키는 학과(부) 교원 전원이 신규채용 종합심사 위원으로서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심사를 실시한다. 총괄연구업적 심사는 [별표 1]의 평가서에 의해 실시한다.

② 총괄연구업적 심사 결과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등급의 평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다만,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또한 그 평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대학장이 판단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보강한 후 재평가한다.

제4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기초 및 전공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중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심사위원규정을 만족시키는 학과(부) 교수 전원과 인사위원 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개 발표(15점), 자기소개서와 교육 및 연구계획서(15점)를 [별표 2]의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되 세칙 제6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중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평가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다만,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등급(점수)의 평가 각 2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 점수로 한다. [개정 2019. 6. 5.]

③ 면접심사 중 임용적합성(10점)은 인사위원회에서 [별표 3]에 따라 심사하되, 출석인사위원의 2/3이상이 ‘가’ 인 경우 ‘적합’ 처리한다. [개정 2022.8.11.]

④ 면접심사 종료 후 해당 학과(부)장은 ‘공채심사종합평가표’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세칙」 서식6)와 학과(부) 교수회의 후 논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신설 2022.8.11.]

제5조(임용후보자 및 임용예정직급과 임용기간 결정) 학장은 인사위원회의 임용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임용후보자를 고득점자순으로 순

위를 부여하여 최고득점자를 총장에게 추천하되, 임용추천되는 후보자의 임용예정직급과 임용기간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8.11.]

부 칙

(시행일) 본 지침은 공포한 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지침은 2019. 6. 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11.)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괄연구업적 평가표

모집분야 :

지원자 :

심사분야	평가항목	평가 점수	평가등급 및 배점					비고
			수	우	미	양	가	
총괄연구업적 (20점)	연구업적의 포괄적 수준 ¹⁾	10	10	8	6	4	2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 ²⁾	10	10	8	6	4	2	
	합 계	20						

- 1)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여부, 각 연구업적의 총 저자수, 박사 취득 후 연평균 연구 업적, 연구주제의 창의성, 연구주제의 발전 가능성, 연구업적의 임용분야 적합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
- 2) 연구결과물(논문, 학술대회 발표, 특허, 저서 등)의 수준, 발표된 학술지의 수준, 국내/국외 특허, 출판사의 수준 등을 반영

[별표 2] [개정 2019.6.5.]

공개발표와 교육 및 연구계획 평가표

모집분야 :

지원자 :

심사분야	평가항목	배점	점수	비 고
공개발표 (15점)	발표내용의 수준과 전문성	10		
	국제화 및 의사전달능력	5		
	소 계	15		
교육 및 연구계획 (15점)	교육 및 연구계획서	5		
	교과목 이수형태 및 성적	5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5		
	소 계	15		
합 계		30		

20 . .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심사위원

(인)

[별표 3] [개정 2019.6.5., 2022.8.11.]

임용적합성 평가표

모집분야 :

지원자 :

평가항목	임용적합성 평가점수 (10점)	심의결과	
		가	부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 학과 발전 방안과의 부합성, 리더십, 잠재능력, 품위 및 윤리의식			
종합의견:			